

2025년도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

지역 대중소유통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「2025년도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」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7월 25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지역 대·중소유통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상생 생태계 구축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

□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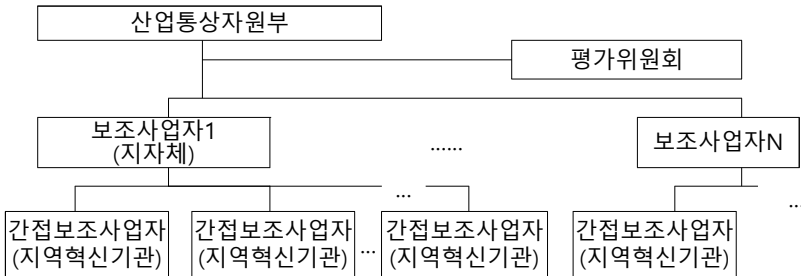
- (사업내용) 지역 유통산업 관련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, 대형유통 업체의 인프라·노하우·인력 등 보유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대·중소유통 상생협력 과제 사업비 지원
- (수행방식)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행
 -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로 보조금수령자 지위, 국비 및 지방비 매칭하여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집행 또는 조달 계약 체결

□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

- (지원대상)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에 선정된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
- (지원규모) 1개 과제당 5억원 이내 (자치단체경상보조)
 - * 총사업비(국비+지방비)의 50% 이상 지방비 매칭, 이때 지방비는 기존 편성 사업 및 추경으로도 매칭 가능
 - * 외부 회계감사에 필요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산정
- (지원기간) 협약체결일 ~ 2025.12.31.

□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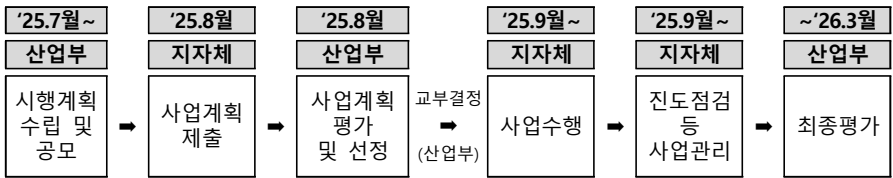
○ (사업추진체계)



○ (주체별 역할)

구 분	주요 역할
산업통상자원부	○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, 예산 교부 ○ 사업계획·진도 점검, 사업실적 관리, 현장실태조사, 위원회 운영
평가위원회	○ 보조사업자 및 예산 규모 확정 등 중요사항 심의 ○ 지자체별 사업수행계획, 연차 또는 결과보고서 평가
보조사업자 (지자체)	○ 사업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○ 사업 주관 총괄 및 간접 보조사업자 업무 관리 ○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○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, 사업비 정산 등 역할 수행
간접보조사업자 (지역혁신기관)	○ 보조사업자 업무 전반을 보조하여 참여기관(대중소 유통)과 사업 수행 - 지역연구원, 지역 테크노파크(TP), 지역사업평가단 및 지역내 대학 산학협력단 등 비영리 기관

□ 추진절차



※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용

2.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

□ 지원내용

- 지역 유통산업 관련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, **대형유통업체**의 인프라·노하우·인력 등 **보유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대-중소유통 상생협력 과제** 사업비 지원

< 대중소 상생협력 과제 예시 >

- ❶ (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) 11월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,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유통·전통시장 공동 대형 할인행사 등 진행
- ❷ (중소유통 판매촉진) 지역 중소유통에서 일정 금액 이상 물품 구매시 환급금 지급 등 중소유통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
- ❸ (중소유통 판로개척) 대형유통기업 내에 지역 중소유통·전통시장 판매코너·홍보관 운영, 공동 판매행사 개최 등 대-중소유통 상생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
- ❹ (중소유통 홍보행사) 전통시장 내 백화점 팝업스토어 개최 등 지역 중소유통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행사 개최
- ❺ (디지털 전환 지원) 점포별 POS 데이터 활용을 통한 판매전략 수립, 카드단말기 활용방법 교육 등 중소유통에 대한 IT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 지원

* 상기 예시 외에도 사업 취지에 맞는 과제는 자유롭게 지원 가능 (단, 자본보조성 과제는 제외)

□ 선정절차 및 방향

- (선정절차) 지자체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에서 총 예산을 고려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

* 선정절차 : 사업신청(지자체→산업부) → 제안서 발표 및 평가(평가위원회) → 최종 확정 및 통보(산업부→지자체)

○ (선정기준)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배경 및 필요성	배경 및 목표, 현황 및 애로사항, 필요성 및 기대효과	20
추진계획	사업개요, 예산계획, 추진전략, 추진체계 및 일정	40
기대효과	상생협력 기여도, 지역 경제 기여도, 성과관리계획	20
사업수행 역량	사업 수행실적, 참여인력 및 기타	20
합 계		100

* 가점 항목 : 과거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한 협의 노력,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등 (10점)

3. 신청방법

□ 오프라인 신청

- (신청서류) 아래 목록 참조

NO.	제출서류	부수	비고
1	사업신청서 ([첨부] 제출양식 중 별지 제1호)	1부	양식 변경 가능
2	사업계획서 ([첨부] 제출양식 중 별지 제2호)	10부	원본 1부, 사본 9부
3	지자체 지방비 매칭 협약서 ([첨부] 제출양식 중 별지 제3호)	1부	증빙첨부

- (접수방법) 우편제출

*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,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김명진 주무관(044-203-4383)

- (접수기간) 2025년 8월 21일(목) 18시까지

*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, 이후 제출본은 받지 않음

- (문의처) 산업부 유통물류과 김명진 주무관(044-203-4383)

□ 온라인 신청

○ (신청방법)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)을 통해 신청

- e나라도움 접수 : <http://www.gosims.go.kr/>

* 공모사업 찾기 후, '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' 검색

○ (문의처)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

4. 사업 추진일정

사업 공고 (‘25.7월)	(1)사업 공고 (산업부) ↓	■ 사업 지원계획 공고
과제 신청 (‘25.7월)	(2)과제 신청 (지자체) ↓	■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- 사업신청서, 계획서 등 (지자체 → 산업통상자원부)
사전검토 (‘25.8월)	(3)서류사전검토 (산업부) ↓	■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■ 필요시 신청 지자체에 대한 사전미팅
평가/선정 (‘25.8월)	(4)평가위원회 개최 (산업부) ↓	■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대면발표 질의·응답 - 지자체 발표 → 위원회 질의응답 → 선정·평가결과 통보 → 이의신청 →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결정 -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5~10명 내외로 위원 구성
이의신청 (‘25.9월)	(5)이의신청 접수 (산업부) ↓	■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■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심을 할 수 있으며, 재심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 불가
확정/협약 (‘25.9월)	(7)보조사업자 확정 및 협약 (산업부) ↓	■ 보조사업자(지자체) 확정 및 통보 (산업통상자원부 → 지자체) ■ 협약 진행
사업관리 (~‘26.3월)	(8)진도점검 등 수행현황 점검 (지자체) ↓	■ 사업 연차·결과보고서 제출(지자체 → 산업통상자원부) - 필요시 중간점검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
실적보고 (~‘26.3월)	(8)결과보고서 제출 (지자체) ↓	■ 사업 연차·결과보고서 제출(지자체 → 산업통상자원부)
결과 심의 (~‘26.3월)	(9)결과보고서 심의 (산업부)	■ (평가위원회)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를 통한 목표대비 성과 달성 등

*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5. 관련 규정

- ☐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
- ☐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을 따르며, 과제 공고 기간 중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·개정되는 경우, 제·개정된 법·규정에 따름

6. 유의사항 및 관리계획

☐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(e-나라도움, <http://www.gosims.go.kr>) 적용 대상 사업임
- 본 사업은 경상보조 사업으로, 자본보조성 장비 구축을 금지함
- 본 사업 민간부담금 비율은 지자체별 협약 내용에 따름

☐ 관리계획

- 내실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아래 사항에 대해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전송해야 함
 -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
 -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
 -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여부
- 사업 종료 후 외부 회계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

7. 문의처

☐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

- 김명진 주무관(044-203-4383, kimmyji@korea.kr)

1 사업공고
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 개요, 내용, 신청 자격,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 공고와 사업신청서 등의 양식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,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

2 사업신청

-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작성양식 내 “사업신청서”, “사업계획서”, “지방비 매칭 확약서”와 기타 필수·선택 별첨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을 신청
- 사업신청은 신청마감일 18:00까지 ‘제출’된 신청만 유효
 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신청
 - ※ 본 지원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(공인인증서 필요)

※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

- ① e나라도움 로그인 → ② 사업수행관리 → ③ 신청관리 → ④ 사업신청 관리 → ⑤ 공모현황 → ⑥ 공모명 ‘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사업’ 선택 후 ‘신청서 작성’ 클릭

3 선정·평가
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계획 타당성 및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“평가위원회”를 구성·운영
-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사회경제 및 유통산업, 지역 전문가 5~10명으로 구성하며, 신청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, 진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
-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적합여부와 연차·결과보고서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

1. 사업의 목적, 방법,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 사업 내용의 타당성
2.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
3. 예산규모의 합리성 등 규모의 적정성
4. 기존 사업과의 유사·중복 수행 가능성
5.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
6. 지방비 매칭 확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
7. 사업계획 대비 수행 여부
8. 제시된 목표 이행 여부
9.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
10. 사업수행체계의 효율성
11.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공고로 정하는 사항
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평가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신청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선정·평가 결정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
- 평가위원회는 원안 또는 이의신청 발생시 재심의 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

4) 이의신청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차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음
- 평가위원회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

⑥ 확정 및 협약
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확정 및 사업비 규모 조정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 목적의 적합성, 추진 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정 및 확정하며, 확정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 지원을 결정한 후에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산교부 절차를 진행
 - 사업자 결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, 사업비의 교부를 공문으로 신청
- 사업자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연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변경승인 요청해야 함

⑦ 결과 보고 및 정산

-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 별도의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 및 외부 회계전문기관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 - * 정산보고서는 "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"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
- 보조사업자는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

터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분리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

-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
 -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음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등을 포함한 사업 실적 점검을 위해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

- | |
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사업비 집행 현황2. 사업 효과에 관한 사항 |
|--|